



문서번호	주민생활과-11337
결재일자	2015.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복지지원팀장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국장	
이성자	김미자	최성연	05/29 박기웅	
협조				

- 2015년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계획



성 동 구

(주민생활과)

사전 검토 사항

※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 구분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약(약속)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인센티브/공모사업 <input type="checkbox"/>
소통 분야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민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이해당사자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기 타 고려 사항	일 자리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 <input type="checkbox"/> 안 전 <input type="checkbox"/> 유지비용 <input type="checkbox"/> 바른 공공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 인 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 애 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디 자 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요인 <input type="checkbox"/>
타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서 울 시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언 론 홍 보 계 획	기획보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SDTV <input type="checkbox"/> 성동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성동구소식지 <input type="checkbox"/> 기 고 문 <input type="checkbox"/> 전자행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S N S <input type="checkbox"/> 기타(리플릿 등) <input type="checkbox"/> 없 음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p>※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목 차

I	추진근거	1
II	추진방향	1
III	사업개요	1
IV	세부추진계획	2
V	행정사항	4
	붙임1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 긴급복지 비교	5
	붙임2 위기상황 인정 사유	6
	서식제1호 ~ 제7호	7~13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계획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즉시 지원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결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

I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15. 5. 14.(목) 개정 공표
- ☐ 2015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시행 안내(희망복지지원과-5816호, 2015.05.15.)

II 추진방향

- ☐ 위기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지원으로 복지서비스의 최후 안전 장치 마련
- ☐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기가구에 즉시 대응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III 사업개요

- ☐ 기 간: 2015. 6. 1. ~ 12. 31.
- ☐ 대 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
- ☐ 기 준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가구
 - 재산기준: 18,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 내 용: 위기 가구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 등 맞춤형 현물 지원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이상 50만원 이내)
- ☐ 예 산: 12,775천원(2/4분기, 전액 시비)

IV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법정 지원제도 우선 안내 및 지원, 법정 지원 불가능한 경우 지원 검토
- 지원제한
 - 주민등록이 서울시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주거지가 불분명한 노숙인, 부랑인 등은 지원 제한
(말소자의 경우 마지막 주소지가 서울이면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85%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 재산기준: 18,9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및 지자체장 인정사유도 모두 적용(붙임2 참고)

지원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현물지원 원칙,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위기 가구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 등 맞춤형 물품 지원
예) 식사 지원, 생필품, 난방연료, 입원 수속금 등
- 지원금액: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 이내
(담당자 선지원시 20만원 이내)
- 지원횟수: 1회 원칙, 선지원의 경우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지원결정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조사 결과 등 자격요건 조사·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우선 적용 및 최근 자료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음.
- 동 통합사례회의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동의 특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서비스 내용 및 금액결정

담당자 선지원 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 사례회의 개최하여 사후 승인**

동 사례회의

- 구 성: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동 주민센터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
- 역 할
 - 위기 가구에 대한 판단 및 지원 내용(물품, 금액) 결정
 - 소득 재산 지원 기준 초과자에 대한 지원 결정 여부 심사
 - 담당자 재량에 의한 선지원의 사후 승인

□ 지원방법

- 현물지원(당일): 동 주민센터 카드 결제로 위기 해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 ➔ 위기 가구에 직접 지원 ➔ 물품 구입비용 요청(동 주민센터 → 구청)
 - ➔ 동 주민센터 카드 계좌로 물품 구입비용 입금 처리
- 현금지원(5일 이내): 현금 지원 결정 및 지급 요청 공문 시행(동 주민센터 → 구청)
 - ➔ 5일 이내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계좌로 입금 처리

□ 사후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지원내용 입력: 보건복지부 협의 후 추후 시행
-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 희망복지팀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관리
 - 타 지원제도(법정지원 및 민간후원제도) 연계

□ 지원절차도



□ 소요예산: 12,775천 원(2/4분기 예산, 전액 시비)

- 동 주민센터별 통합관리대상자현황 참고하여 차등 배분
- 추후 동별 지원실적에 따라 3/4분기 예산 배정시 조율

V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홍보
- 업무 체계 개선
 -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초기 상담 및 접수 실시
(긴급복지 지원사업: 구청 → 동 주민센터)
 - 여러 제도를 고려하여 대상가구에 대한 맞춤형 종합 상담 시행
-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후 실적보고 공문 시행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 긴급복지 비교

구 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복지지원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 재산 :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 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 지원 원칙, 현금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지원(카드결제) : 20만원 이하 생계, 주거, 의료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 30만원 이내 2인 이상 가구 : 5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 항목, 중복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급여(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권) 부가급여(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원칙(선지원의 경우 20만원 한도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별 상이 : 2회~12회
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례회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경과 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775천원(2/4분기, 전액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0,000천원 ※ 국비:시비:구비=50:25:25
수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 자치구 → 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위기상황 인정 사유

긴급복지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 경과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 과다채무에 의한 생계곤란 인정('12.4.5 복지정책과-8243)

지자체장이 인정한 주요 위기상황

-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국기초, 서기초 탈락 및 신청 탈락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고시원, 창고, 폐가, 천막, 다리밧,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중독, 도박,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미성년 가구나 미혼모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세월호 사고 관련 가구원 사망, 실종 확인 등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을 시도한 가구 중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받은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 월세 등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주거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사 례 회 의 결 과 서

1. 지원대상자 정보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가구원수	연락처	기 타

2. 지원 결정 사항

지원 구분			지원 금액	지원 사유	비 고
선지원 여부	물품/현금	항목			
1)	2)	3)	4)	5)	6)

3. 위와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함

2015. . .

확인 7) 1. 소속 직위 이름 (인)
 2. 소속 직위 이름 (인)
 3. 소속 직위 이름 (인)

○ ○ 동 주민센터

- 1) 선지원 여부 작성 : 선지원인 경우만 표시, 사례회의 지원인 경우 공란
- 2) 물품 지원, 현금 지원인지 구분하여 작성
- 3) 생계, 주거, 의료, 기타로 구분 작성
- 4) 물품의 경우 물품 구입액(카드결제 영수증 금액), 현금의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
- 5) 사례회의에서 지원 결정한 사유 구체적 기재, 선지원의 경우 선지원한 사유 기재
- 6) 기타 특이 사항 기재
- 7) 사례회의에 참여한 3인 이상의 구성원 기록하여 확인 서명

※ 기준 초과자의 경우 작성

특별지원확인서

1. 지원대상자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가구원수	연락처	기타

2. 지원 사유

2015. . . .

확인 1) 1. 소속 직위 이름 (인)
 2. 소속 직위 이름 (인)
 3. 소속 직위 이름 (인)

○ ○ 동 주민센터

1) 사례회의 3인 이상의 구성원 기록하여 확인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자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을동의함 (서명 또는 인)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서울형 긴급복지 및 타 복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 이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중복 지원 및 확인을 위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업무처리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 년 월 일
○○구청장 귀하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 - [][][][][][][][][][]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 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한글정자 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 보고

(작성 예시)

보고년월 : 2015. 5월

자 치 구 : ○○구

지원현황

(단위 : 가구수, 천원)

구분	지원 합계		생계		의료		주거		기타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당월										
누계										

구분	지원 합계		선지원		사례회의		현물		현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당월										
누계										

특이사항 보고

연번	대 상 자			보고 내용
	성 명	주소지	지원 내용	
1				
2				
3				
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장

연번	지원 일자	지원 대상자							지원 사유	지원 구분 (현물/현금)	지원 내용(금액)				지원구분 (선지원/사례회의)	지원 내역	입금계좌번호 (은행/계좌번호/예금주명)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거주지)			가구원수	연락처			생계	주거	의료	기타				
				구명	동명	주소												
								(작성 예시)										
1	6.25.	김○○	52.03.25.	성동구	금호2-3가동	금호산9길 61	3	***** *****	화재로 인하여 임시 거처 필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임시 주거지(여관) 지원	현물		250,000			사례회의	여관 10일 숙박비 지원	우리은행 1002-123-111222 (금호2-3가동)	
2	6.28.	정○○	09.07.13.	성동구	성수1가 제1동	둘레3길 19-23	2	***** *****	놀이터에서 다친 아이 발견, 모자 가구로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아 병원 응급 조치 필요	현물			55,000		선지원	응급실치료비		
3	7.5.	이○○	07.12.07.	성동구	용답동	용답1길 4-13	3	***** *****	조손가정인 본인 초등2학년, 동생 7세와 같이 살고 있으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3일간 밥을 굶고 있었음	현물	150,000			사례회의	집주변 식당 10일 정도의 식사 제공			
4																		
5																		

끝.